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4<br>8~8p<br>번호 : 46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46 정답 ②<br>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.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인원(명)</th><th>매우충분 비율(%)</th><th>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</th></tr>
<tr><td>10대<br>(15 ~ 19세)</td><td>696</td><td>4.0</td><td>696×0.04≒ 27</td></tr>
<tr><td>20대</td><td>1,458</td><td>6.4</td><td>1,458×0.064≒ 93</td></tr>
<tr><td>30대</td><td>1,560</td><td>3.8</td><td>1,560×0.038≒ 59</td></tr>
<tr><td>40대</td><td>1,998</td><td>4.5</td><td>1,998×0.045≒ 89</td></tr>
<tr><td>50대</td><td>2,007</td><td>5.2</td><td>2,007×0.052≒ 104</td></tr>
<tr><td>60대</td><td>1,422</td><td>9.6</td><td>1,422×0.096≒ 136</td></tr>
<tr><td>70대 이상</td><td>1,357</td><td>17.9</td><td>1,357×0.0179≒ 24</td></tr>
</table>
따라서 인원이 가장 적은 순서는 '70대 이상 – 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'이다.</td><td>46 정답 ②<br>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.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인원(명)</th><th>매우충분 비율(%)</th><th>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</th></tr>
<tr><td>10대<br>(15 ~ 19세)</td><td>696</td><td>4.0</td><td>696×0.04≒ 27</td></tr>
<tr><td>20대</td><td>1,458</td><td>6.4</td><td>1,458×0.064≒ 93</td></tr>
<tr><td>30대</td><td>1,560</td><td>3.8</td><td>1,560×0.038≒ 59</td></tr>
<tr><td>40대</td><td>1,998</td><td>4.5</td><td>1,998×0.045≒ 89</td></tr>
<tr><td>50대</td><td>2,007</td><td>5.2</td><td>2,007×0.052≒ 104</td></tr>
<tr><td>60대</td><td>1,422</td><td>9.6</td><td>1,422×0.096≒ 136</td></tr>
<tr><td>70대 이상</td><td>1,357</td><td>17.9</td><td>1,357×0.179≒ 242</td></tr>
</table>
따라서 인원이 가장 적은 순서는 '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 – 70대 이상'이다.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4<br>11~11p<br>번호 : 60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60 정답 ②<br>• A :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, 단화방 1개월, 노숙인 시설 1개월로 2달만 거주하여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>• B :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여인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고, 3인 가구 소득기준도 충족하므로 입주대상이다.<br>• C :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,189,905원이지만 월 소득이 2,200,000원이므로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>따라서 해당되는 B의 월 임대료는 3천 만×1%=300,000원이다.</td><td>60 정답 ②<br>• A :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, 단화방 1개월, 노숙인 시설 1개월로 2달만 거주하여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>• B :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여인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고, 3인 가구 소득기준도 충족하므로 입주대상이다.<br>• C :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,189,905원이지만 월 소득이 2,200,000원이므로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>따라서 해당되는 B의 월 임대료는 (3천 만–50만)×1%=795,000원이다.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</td></tr>
</table>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|---|---|---|
| 4<br>12~12p<br>번호 : 68 | 해설 | 68 정답 ②<br>A씨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작으므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을 지원받는다.<br>• 실제임차료 : 2,000만×0.04÷12+20만=266,666원<br>B씨는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크므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는다.<br>• 실제임차료 : 2,500만×0.04÷12+15만=233,333원<br>• 자기부담분 : (1,200,000−1,161,173)×0.03=38,827×0.03=1,164원<br>→ 233,333−1,164=232,169원<br>따라서 A씨와 B씨가 받는 지원금의 합은 266,666+232,169=498,835원이다 | 68 정답 ②<br>A씨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작으므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을 지원받는다.<br>• 실제임차료 : 2,000만×0.04÷12+20만=266,666원<br>B씨는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크므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는다.<br>• 실제임차료 : 2,500만×0.04÷12+15만=233,333원<br>• 자기부담분 : (1,200,000−1,161,173)×0.3=38,827×0.3=11,648원<br>→ 233,333−11,648=221,685원<br>따라서 A씨와 B씨가 받는 지원금의 합은 266,666+221,685=488,351원이다. |
| | | 수정 사유 | 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 |
| 4<br>14~14p<br>번호 : 79 | 해설 | 79 정답 ③<br>ㄱ.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로 70%보다 높다.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가구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는다.<br>ㄴ. F는 3순위에 해당되므로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적용받는다.<br>오답분석<br>ㄷ. F가 받을 수 있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광역시의 3인 거주 형태이므로 1.5억 원이다. 여기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4,800만 원이며, 1억 4,800만 원의 1%는 1,480만 원이다. 따라서 F는 연간 최소 1,48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| 79 정답 ③<br>ㄱ.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로 70%보다 높다.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가구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는다.<br>ㄴ. F는 3순위에 해당되므로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적용받는다.<br>오답분석<br>ㄷ. F가 받을 수 있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광역시의 3인 거주 형태이므로 1.5억 원이다. 여기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4,800만 원이며, 1억 4,800만 원의 1%는 148만 원이다. 따라서 F는 연간 최소 148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| | | 수정 사유 | 해설 수식 및 정답 오류에 따른 수정 |
| 1<br>35~35p<br>번호 : 46 | 문제-문항 | 46. 다음 중 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이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(단, 인원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버림한다).<br>① 70대 이상 – 30대 – 40대 – 1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.<br>② 70대 이상 – 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.<br>③ 70대 이상 – 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60대 – 50대.<br>④ 70대 이상 – 10대 – 30대 – 60대 – 20대 – 40대 – 50대.<br>⑤ 10대 – 70대 이상 – 40대 – 60대 – 30대 – 20대 – 50대. | 46. 다음 중 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이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(단, 인원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버림한다).<br>① 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60대 – 50대 – 70대 이상.<br>② 10대 – 30대 – 4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 – 70대 이상.<br>③ 10대 – 30대 – 60대 – 20대 – 40대 – 50대 – 70대 이상.<br>④ 10대 – 40대 – 60대 – 30대 – 20대 – 50대 – 70대 이상.<br>⑤ 30대 – 40대 – 10대 – 20대 – 50대 – 60대 – 70대 이상. |
| | | 수정 사유 | 문제 문항 오류에 따른 수정 |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|---|---|---|
| 1<br>45~45p<br>번호 : 59 | 문제-본문 | 59 다음은 행복카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화이다.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<br>김 씨 : 행복카를 이용해서 아반떼를 30분 예약하여 타다가 연장을 해서 18분을 더 탔어. 그래도 7000원도 안 들더라.<br>이 씨 : 난 만 26세이고, 10개월 전에 면허를 취득해서 계속 운전을 해 왔는데 급히 갈 데가 있어 행복카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용할 수 없대. 어이가 없어서 참냐...<br>박 씨 : 렌트카랑 다르게 보험이 다 되어 있어서 안심이 돼서 이용하게 되었어. 일요일 밤 11시쯤 딸을 마중 나가려 두 번째로 저렴한 차를 1시간 빌렸고, 한 5km 운전했나? 6천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.<br>최 씨 : 나는 행복카 이용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어. 1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, 과태료도 나왔다고 통보가 와서 직접 납부하러 가야 돼.<br>① 김 씨 ② 이 씨<br>③ 박 씨 ④ 최 씨<br>⑤ 없음 | 59 다음은 행복카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화이다.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<br>김 씨 : 행복카를 이용해서 아반떼를 30분 예약하여 타다가 연장을 해서 18분을 더 탔어. 그래도 주행요금 빼고 7,000원도 안 들더라.<br>이 씨 : 난 만 26세이고, 10개월 전에 면허를 취득해서 계속 운전을 해 왔는데 급히 갈 데가 있어 행복카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용할 수 없대. 어이가 없어서 참냐...<br>박 씨 : 렌트카랑 다르게 보험이 다 되어 있어서 안심이 돼서 이용하게 되었어. 일요일 밤 11시쯤 딸을 마중 나가려 두 번째로 저렴한 차를 1시간 빌렸고, 한 5km 운전했나? 6천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.<br>최 씨 : 나는 행복카 이용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어. 1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, 과태료도 나왔다고 통보가 와서 직접 납부하러 가야 돼.<br>① 김 씨 ② 이 씨<br>③ 박 씨 ④ 최 씨<br>⑤ 없음 |
| | | 수정 사유 | 문제 지문 오류에 따른 수정 |
| 1<br>46~46p<br>번호 : 60 | 문제-문항 | 60 다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이다. <보기>의 사람 중 저세임대로 입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1개월 월 임대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?<br>• 저세임대<br>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저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<br>• 입주대상<br>–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<br>–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br>*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<br>– 지방접수창에 신청하여 범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<br>• 입주 자격<br>– 소득기준(월 소득 기준 이하인 자)<br>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<br>1,322,574원 2,159,905원 2,813,449원 3,113,171원<br>• 대상주택<br>국민주택규모(전용 85m²)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, 다세대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단, 1인가구는 60m² 이하로 면적제한)<br>• 임대조건<br>구분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 거주자 일반 저세임대주택과 동일<br>임대보증금 50만 원<br>월 임대료 저세기준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% 이자해당액<br><보기><br>• A : 70세로 최근 사업이 망해 수입이 없으며, 노숙인 시설에서 1개월 전부터 거주하였고, 그 전에 6개월 전에 만화방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. 55m² 정도의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여, LH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저세기준중 3,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.<br>• B : 15세, 12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B는 월 2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나, 집을 구하기 못해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계속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다. LH는 35m²의 아파트 임대에 3천 만 원 전액 지원하여 제공할 예정이다.<br>• C : 신체부부로 가족이 없다. C 혼자 돈을 벌려 월 220만 원 정도 번다.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으며, 갑작기 닥친 범인들의 보복 위협이 있어 새로운 지역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범무부장관에게 인정되었고 LH에 통보되었다. LH는 임대보증금 포함 저세기준금 5,000만 원을 사용해 임대주택을 구할 예정이다.<br>① 500,000원 ② 800,000원<br>③ 1,100,000원 ④ 1,300,000원 | 60 다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이다. <보기>의 사람 중 저세임대로 입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1개월 월 임대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?<br>• 저세임대<br>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저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<br>• 입주대상<br>–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<br>–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br>*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<br>– 지방접수창에 신청하여 범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<br>• 입주 자격<br>– 소득기준(월 소득 기준 이하인 자)<br>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<br>1,322,574원 2,159,905원 2,813,449원 3,113,171원<br>• 대상주택<br>국민주택규모(전용 85m²)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, 다세대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단, 1인가구는 60m² 이하로 면적제한)<br>• 임대조건<br>구분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, 만화방 거주자 일반 저세임대주택과 동일<br>임대보증금 50만 원<br>월 임대료 저세기준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% 이자해당액<br><보기><br>• A : 70세로 최근 사업이 망해 수입이 없으며, 노숙인 시설에서 1개월 전부터 거주하였고, 그 전에 6개월 전에 만화방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. 55m² 정도의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여, LH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저세기준중 3,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.<br>• B : 15세, 12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B는 월 2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나, 집을 구하기 못해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계속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다. LH는 35m²의 아파트 임대에 3천 만 원 전액 지원하여 제공할 예정이다.<br>• C : 신체부부로 가족이 없다. C 혼자 돈을 벌려 월 220만 원 정도 번다.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으며, 갑작기 닥친 범인들의 보복 위협이 있어 새로운 지역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범무부장관에게 인정되었고 LH에 통보되었다. LH는 임대보증금 포함 저세기준금 5,000만 원을 사용해 임대주택을 구할 예정이다.<br>① 500,000원 ② 795,000원<br>③ 1,100,000원 ④ 1,300,000원 |
| | | 수정 사유 | 문제 문항 오류에 따른 수정 |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|---|---|---|
| 1<br>53~53p<br>번호 : 68 | 문제-문항 | 68. 다음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자료이다. 자료를 참고하여 <보기>에서 제시된 A씨와 B씨의 상황에 따른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합으로 옳은 것은?<br><주거급여 기준임대료><br>(단위 : 원)<br>1인 266,000 / 2인 302,000 / 3인 359,000 / 4인 415,000 / 5인 429,000<br>2인 225,000 / 2인 252,000 / 2인 302,000 / 2인 351,000 / 2인 365,000<br>3인 179,000 / 3인 193,000 / 3인 236,000 / 3인 274,000 / 3인 285,000<br>4인 153,000 / 4인 174,000 / 4인 209,000 / 4인 239,000 / 4인 249,000<br><생계급여 선정기준><br>(단위 : 원)<br>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0%) 1인 가구 527,158 / 2인 가구 897,594 / 3인 가구 1,161,173 / 4인 가구 1,424,752 / 5인 가구 1,633,331<br>※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에게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<br>※ 선정기준<br>– '소득인정액< 생계급여 선정기준'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 전액을 지원<br>– '소득인정액>생계급여 선정기준'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<br>– (자기부담분)=[(소득인정액)–(생계급여 선정기준)]×30%<br>※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 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.<br>– (실제임차료)=(보증금)×4%÷12개월+(월차임)<br>※ 단, 자기부담분과 실제임차료 계산 시 1원 미만은 버림한다.<br><보기><br>• 서울에 거주 중인 2인 가구 A씨<br>– 보증금 2,000만 원, 월차임 20만 원<br>– 소득인정액 85만 원<br>• 경기도에 거주 중인 3인 가구 B씨<br>– 보증금 2,500만 원, 월차임 15만 원<br>– 소득인정액 120만 원<br>① 483,165원 ② 488,335원 ③ 499,565원 ④ 500,450원 ⑤ 515,930원 | 68. 다음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자료이다. 자료를 참고하여 <보기>에서 제시된 A씨와 B씨의 상황에 따른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합으로 옳은 것은?<br><주거급여 기준임대료><br>(단위 : 원)<br>1인 266,000 / 2인 302,000 / 3인 359,000 / 4인 415,000 / 5인 429,000<br>2인 225,000 / 2인 252,000 / 2인 302,000 / 2인 351,000 / 2인 365,000<br>3인 179,000 / 3인 193,000 / 3인 236,000 / 3인 274,000 / 3인 285,000<br>4인 153,000 / 4인 174,000 / 4인 209,000 / 4인 239,000 / 4인 249,000<br><생계급여 선정기준><br>(단위 : 원)<br>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0%) 1인 가구 527,158 / 2인 가구 897,594 / 3인 가구 1,161,173 / 4인 가구 1,424,752 / 5인 가구 1,633,331<br>※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에게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<br>※ 선정기준<br>– '소득인정액< 생계급여 선정기준'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 전액을 지원<br>– '소득인정액>생계급여 선정기준'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<br>– (자기부담분)=[(소득인정액)–(생계급여 선정기준)]×30%<br>※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 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.<br>– (실제임차료)=(보증금)×4%÷12개월+(월차임)<br>※ 단, 자기부담분과 실제임차료 계산 시 1원 미만은 버림한다.<br><보기><br>• 서울에 거주 중인 2인 가구 A씨<br>– 보증금 2,000만 원, 월차임 20만 원<br>– 소득인정액 85만 원<br>• 경기도에 거주 중인 3인 가구 B씨<br>– 보증금 2,500만 원, 월차임 15만 원<br>– 소득인정액 120만 원<br>① 483,165원 ② 488,351원 ③ 499,565원 ④ 500,450원 ⑤ 515,930원 |
| | | 수정 사유 | 문제 및 문제 문항 오류에 따른 수정 |
| 1<br>65~65p<br>번호 : 79 | 문제-본문 | 79 다음 상황을 보고 <보기>의 설명 중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br><상황><br>• F는 현재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7세, 무주택 세대주이다.<br>•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이다.<br>• F는 3인 공동거주 형태의 주거를 선호한다.<br>• F는 삼척시에서 출생하였다.<br>• F는 대학 소재지의 공급신청지역에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하였다.<br><보기><br>ㄱ. F가 장애등급을 부여받는다면 입주자격 1순위가 된다.<br>ㄴ. F가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적용받을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다.<br>ㄷ. F가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모두 지원받는다면, F가 납부할 임대료는 연간 1,000만 원 이상이다.<br>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 | 79 다음 상황을 보고 <보기>의 설명 중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br><상황><br>• F는 현재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7세, 무주택 세대주이다.<br>•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이다.<br>• F는 3인 공동거주 형태의 주거를 선호한다.<br>• F는 삼척시에서 출생하였다.<br>• F는 대학 소재지의 공급신청지역에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하였다.<br><보기><br>ㄱ. F가 장애등급을 부여받는다면 입주자격 1순위가 된다.<br>ㄴ. F가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적용받을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다.<br>ㄷ. F가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모두 지원받는다면, F가 납부할 임대료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이다.<br>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 |
| | | 수정 사유 | 문제 지문 오류에 따른 수정 |

**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**
**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**